



법령 정보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59호, 2009. 7. 2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과산화수소, 과산화초산 2품목을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추가하고, 포자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확립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신설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▣ 주요내용

화초산 2품목을 III. 제3.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.(III. 제3.8 및 9)

- 가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
으로 기 인정된 「과산화수소」 및 「과산

나. 일반시험법 중 36. 살균소독력시험법에
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.
(IV.36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
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
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등 종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0호, 2009. 7. 3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「식품 등 종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」 일부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(아트라진, 부피리메이트, 클로로벤주론 및 클로로톨루론) 신설(제3조제11호)

다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(제4조)

나. 식품 중 니트로사민류 시험법 신설(제3조제12호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전부개정령 공포

- 대통령령 제21676호, 2009. 8. 6 -

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「식품위생법」이 개정(법률 제9432호, 2009. 2. 6 공포 8. 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·보수에 대한 용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